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99 발의연월일: 2021. 9. 10.

발 의 자:고용진·강훈식·김경만

김민철 • 김수흥 • 양향자

윤관석 • 윤준병 • 임오경

한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경쟁이 심화되고, 보호 무역·패권경쟁 등으로 인한 세계 공급망 재편 가능성이 나타남에 따라, 국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분야 투자 촉진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특히, 이번 코로나 19 팬데믹을 계기로, 백신 등 첨단산업은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까지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이 입증되고 있어, 첨단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점임.

반면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하여 첨단투자를 위한 지원이 다소 부족하고, 산업단지 등 기존 계획입지를 통한 인센티브도 충분하지 않아, 첨단투자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도입과 시행이 특히 중요한 상황임.

따라서, 지역 경제의 거점역할을 수행 중인 산업단지 등 기존 계획입지 내 일부 지역, 또는 대규모 첨단투자가 이루어지는 기업수요지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입주한 첨단투자기업에 국·공유재산의 사용료·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지원,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첨단투자지구 제도'가 도입되어 '21. 9. 16일부터시행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8 274호, 2021. 6. 15. 공포, 9. 16. 시행).

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3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을지원할 필요가 있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법률 제 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